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8. 9 선고 2021가단556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무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정원, 류호문

변 론 종 결 2022. 7. 5.

판 결 선 고 2022. 8. 9.

주 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9. 3. 25. 접수 제120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은 D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7. 2. 6. 접수 5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출계약 등의 체결

- 1) D는 2016. 4. 27. 주식회사 E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16. 5. 10.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2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주식회사 E은 2020. 12. 21. 위 대출금채권 28,000,000원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8,599,069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21. 1. 7.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2) D는 대출금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1. 3. 9. 기준으로 원금 36,599,069원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나. 증여계약의 체결

- D는 2017. 2. 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피고 B은 2019. 3. 25.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금 등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라 할 것이다.

나. D의 채무초과 여부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는 적극재산으로 약 39,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채무 28,000,000원 등, F은행에 대한 채무 약 12,074,000원 등, G은행에 대한 채무 15,000,000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여부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B, 전득자인 피고 C은 D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9. 2. 6.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2. 6. D 앞으로 마쳐진 이후에도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 등을 납부한 사실, 2012.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21,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B이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2009. 2. 6.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 B은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 피고 C은 자신이 선의의 전득자라고 각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 B은 D의 어머니로서 D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취득함으로써 D의 채권자들 공동담보가 감소됨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은 피고 B과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 B 및 D의 경제적 사정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에 대해 인식하였고, 피고 C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D의 채권자들 공동담보가 감소됨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악의의 수익자, 피고 C은 악의의 전득자로 보일 뿐이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D에게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범

별지